

# 윤리경영 실천지침

개정일	2018.03.01
	2019.05.01
	2021.02.01
	2021.12.01
	2024.01.01
제정일	2010.07.01
주관조직	윤리경영팀

# 『목차』

## 1. 총칙

- 1.1 목적
- 1.2 용어의 정의
- 1.3 실천지침의 구성
- 1.4 적용범위

## 2. 고객을 위한 윤리 실천

- 2.1 고객가치 제고
- 2.2 고객약속 준수
- 2.3 고객정보 보호

# 3. Biz. Partner와의 윤리 실천

- 3.1 공정한 기회 제공
- 3.2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
- 3.3 BP정보 보호

# 4. 회사에 대한 윤리 실천

- 4.1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
- 4.2 예산 사용

# 5. 구성원에 대한 윤리 실천

- 5.1 상호 존중
- 5.2 건전한 관계형성

# 6. 나를 위한 윤리 실천

6.1 성실한 업무수행

- 6.2 이해상충 해결
- 6.3 법규 및 규정 준수

# 7.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준수 및 운영·절차

- 7.1 실천지침의 준수
- 7.2 실천가이드 운영
- 7.3 윤리경영 상담센터 운영
- 7.4 상담·신고 접수 시 처리 절차
- 7.5 상담·신고자 보호
- 7.6 금품·선물 수취 시 처리 절차
- 7.7 자선 기부 제공 시 처리절차

# 『윤리경영 실천지침』

### 1. 총칙

#### 1.1 목적

본 윤리경영 실천지침(이하 "실천지침")은 SK오앤에스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1.2 용어의 정의

- 1.2.1 구성원 : SK오앤에스에 재직중인 임직원(계약직, 파견직, 기타 비정규직원 포함)
- 1.2.2 금품 : 금전(현금, 상품권, 이용권, 복권 등), 물품 등 경제적 이익
- 1.2.3 향응·접대 : 술자리, 골프, 공연, 국내외 관광 및 출장, 사행성 오락 등
- 1.2.4 편의 : 교통, 숙박,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이외의 지원
- 1.2.5 금전거래 : 금전대차, 공동투자, 대출보증, 도박 등
- 1.2.6 친인척: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
- 1.2.7 이해관계자 : 구성원의 업무 관련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대리점, 판매점, 납품업체, 협력업체 등 사내 외 모든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단체

#### 1.3 실천지침의 구성

본 실천지침은 고객, Biz. Partner(이하 BP), 회사, 구성원, 본인(나)에 대한 윤리의 「실천강령」,「실천원칙」,「세부지침」의 항목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, 실천지침의 준수 및 운영·절차를 포함하고 있다.

#### **1.4** 적용범위

본 실천지침은 회사의 재직중인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.

### 2. 고객을 위한 윤리 실천

"고객의 기대와 신뢰, 그리고 고객의 행복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."

- 2.1 [고객가치 제고] 고객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.
  - 2.1.1 구성원은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안심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2.1.2 구성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2.2 [고객약속 준수]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  - 2.2.1 구성원은 고객에게 허위/과장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고객에게 끼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은폐하지 않아야 한다.
  - 2.2.2 구성원은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.
- 2.3 [고객정보 보호] 고객정보는 우리의 생존만큼 소중히 보호해야 합니다.
  - 2.3.1 구성원은 고객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, 업무 수행에 있어 고객정보의 수집·관리·사용 시 법규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.

### 3. Biz. Partner와의 윤리 실천

"Biz. Partner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."

- 3.1 [공정한 기회 제공] 공정한 경쟁으로 최고의 BP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.
  - 3.1.1 구성원은 담당 업무 관련 BP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거래를 해치는 요구 또는 청탁을 하지 않아야 한다.
  - 3.1.2 구성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BP에게 정당한 거래 관행에 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.
    - 가. 부정청탁 행위 예시
      - 채용,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
      -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제공이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
      -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
      -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

- 3.2 [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] BP와의 상생은 상호 존중 기반의 투명한 거래에서 시작됩니다.
  - 3.2.1 BP에게 폭언/폭력/성희롱 등 Biz. Manner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.
  - 3.2.2 구성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술자리, 골프, 해외출장/관광 등 향응/접 대 및 개인적 편의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.
  - 3.2.3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.
    - 가. 홍보 및 행사 기념품 : 회사 또는 BP 등의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며, 그 가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물품
    - 나. 경조금 :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(단,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BP에게 알려서 부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)
  - 3.2.4 구성원은 BP와 업무 外 접촉 시 상사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3.2.5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BP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한 경우 즉시 반납하거나, 회사에 신고 후 사회공헌 등에 활용한다.
- 3.3 [BP정보 보호] BP와 거래 중 취득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.
  - 3.3.1 구성원은 BP와의 거래 전/후에 취득한 BP관련 정보를 목적 外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# 4. 회사에 대한 윤리 실천

"회사의 모든 자산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."

- 4.1 [회사 자산 및 정보보호] 우리가 일궈낸 회사의 자산과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  - 4.1.1 구성원은 회사의 유·무형자산 및 기업비밀 등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    - 가. 구성원은 회사의 유형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,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    - 나. 구성원은 회사의 상표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

야 한다.

- 다.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라. 구성원은 회사 정보와 기업비밀 등을 사전 승인 없이 내·외부에 누설하거나 제 공해서는 아니 되며,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 정보보호, IT보안 및 고객정 보 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회사의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마. 구성원은 소셜 미디어 등에 회사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거나 부정적 인식을 유발시키는 행위, 회사의 경영정보 및 기업비밀 등을 누설 또는 제공하 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4.1.2 구성원은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손실발생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 방지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
- 4.2 [예산 사용] 아무리 사소한 예산이라도 정직하게 사용해야 합니다.
  - 4.2.1 구성원은 업무 목적 外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비용을 사용하지 않고, 경비 집행 및 정산 시 허위 증빙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
# 5. 구성원에 대한 윤리 실천

"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족이며, 서로 존중하고 존중 받아야 할 우리의 동료입니다"

- 5.1 [상호 존중] 동료와의 상호존중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.
  - 5.1.1 구성원은 폭언, 폭행 등의 무례하거나 위압적인 행위,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수 있는 성적 괴롭힘 행위 또는 이로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.
  - 5.1.2 구성원은 음주/흡연 강권, 직위·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등 구성원의 신체적· 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지 않아야 한다.
  - 5.1.3 구성원은 성별, 학연·지연, 결혼·임신,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, 상하간 또는 동료 평가 시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.
- 5.2 [건전한 관계형성] 철저한 公과 私의 구분으로 동료와 두터운 신뢰 관계를 만들어야

#### 합니다.

5.2.1 구성원은 부적절한 금전거래, 업무와 무관한 사적 부탁이나 지시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,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# 6. 나를 위한 윤리 실천

"진정한 SKT人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에게 당당합니다."

- 6.1 [성실한 업무수행] 순간의 부적절한 판단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합니다.
  - 6.1.1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- 6.1.2 구성원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빈틈없고 야무지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, 업무 소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  - 6.1.3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  - 6.1.4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, 겸업, 부업 등을 하지 않는다. 단, 회사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.
- 6.2 [이해상충 해결]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합니다.
  - 6.2.1 구성원은 회사와 이해상충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음은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관계의 예시이나, 모든 이해상충관계를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요구된다.
    - 가. 행위가 금지되는 이해상충의 예시
      - 1)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
        - 회사가 투자 또는 매수, 임차하려고 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행위

- 회사정보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본인 또는 제3자의 고용, 취업 추 천 등을 보장하는 행위
- 2)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와 금전대차, 공동투자, 대출보증, 도 박 등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
- 3)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로부터 과도한 보상을 받는 행위
- 나.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이해상충의 예시
  - 1)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, BP 및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
  - 2)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
  - 3)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BP의 주식이 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
- 다. 불가피하게 구성원이 회사와 이해상충 상황에 직면할 경우 반드시 이해상충 내용을 '윤리경영 담당부서'에 신고해야 하며, 필요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또한 구성원의 친인척이 회사나 BP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'윤리경영 담당부서'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6.3 [법규 및 규정 준수] 법규 및 회사규정은 SKT人으로서 기본으로 준수해야 합니다.

6.3.1 구성원은 경영활동, Compliance 의무, 안전·환경 등에 대한 모든 관련 사규,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고, 부당한 공동행위, 부당한 내부거래, 돈세탁,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# 7.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준수 및 운영·절차

"진정한 SKT人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에게 당당합니다."

#### 7.1 실천지침의 준수

- 7.1.1 모든 구성원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,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·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.
- 7.1.2 조직의 리더는 소속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 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

리할 책임이 있으며, 솔선하여 준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.

7.1.3 구성원은 매년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, 서약내용을 준수하여 한다.

#### 7.2 실천가이드 운영

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실천지침을 준수하는데 있어 구성원들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'윤리경영 실천가이드'를 제정·운영할 수 있으며, 부문 이하 단위조직은 해당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'구성원행동준칙', '행동강령' 등을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

#### 7.3 윤리경영 상담센터 운영

- 7.3.1 실천지침의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'윤리경영 담당부서'를 구축· 운영한다.
- 7.3.2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'윤리경영 담당부서'에 게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.
- 7.3.3 회사는 상담·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·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#### 7.4 상담·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

- 7.4.1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구성원과 관련된 윤리경영 관련 상담·신고가 있는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  - 가. 상담·신고된 사안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사 하거나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.
  - 나.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취업규칙 등 회사의 제반 사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- 7.4.2 BP 관련 상담·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  - 가. 회사는 사안의 중대성,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BP와 의 거래물량 제한,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- 나.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영향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BP 및 피신고자 등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.
- 7.4.3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윤리규범 관련 상담·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접수일 자 순으로 기록하여 저장매체에 보관한다.

#### 7.5 상담·신고자 보호

- 7.5.1 회사는 상담·신고자, 조사협조자의 신분 및 상담·신고 내용을 최우선으로 보호 하며, 상담·신고와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- 7.5.2 상담·신고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력관리 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7.5.3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 등에 상담·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, 취업규칙에 의거 조치한다.
  - 가. 면책이 가능한 예외조항
    - 심각한 인명 안전사고 및 사업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
    - 무고 및 음해, 심각한 부정사건, 회사 기밀유출 및 자료 위변조, 언론 보도 사항 등
- 7.5.4 상담·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그 사실을 상담·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.
- 7.5.5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감사인은 감사인 수행지침을 준수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제보자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

#### 7.6 금품·선물 수취 시 처리 절차

불가피하게 금품/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, 그 경과를 '윤리경영 담당부서'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가.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.
- 나. 반송이 곤란하거나 부패, 변질 등의 사유로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
  - 주위의 사회공헌단체(본사는 윤리경영 담당부서)에 물품을 전달한다.
  - 승진, 이동 등과 관련된 난·화분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일괄 처분하여 그수익금을 결연단체 등에 기증한다.

#### 7.7 자선 기부 제공 시 처리절차

모든 자선기부는 회사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아니되며, 명확하게 자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그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.